제382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20. 10. 13. 국정감사)

병무청

위원별 목차

1. 강 대 식 위원 ····· 1

2. 박 성 준 위원 ····· 7

3. 이 채 익 위원 ····· 31

국민의힘 강 대 식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강 대 식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

1.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질환과 같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질병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병역면탈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병역면탈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신성한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복무 면제 증가하는 데 병역면탈 조사는 미실시〉

3.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예비군 자원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인구감소와 같은 자연감소 이외에도 질병 등으로 예비군 복무를 면제받는 인원들도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해 3,261명이 예비군 복무를 면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병역면탈 수사를 실시하는지?
5. 이것을 묻는 이유가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단순히 전역을 하거나 소집해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등 예비군 복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함.

▲ 질 의 1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 답 변

○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 추세이나,

○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체계 구축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로 면탈범죄 반드시 적발하겠습니다.

▲ 질 의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질환과 같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질병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병역면탈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병역면탈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신성한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 변

○ 예, 정신질환은 진료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경제활동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심이 들거나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3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예비군 자원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예비군 자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 의 4

인구감소와 같은 자연감소 이외에도 질병 등으로 예비군 복무를 면제받는 인원들도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해 3,261명이 예비군 복무를 면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병역면탈 수사를 실시하는지?

△ 답 변

○ 예비군도 병역판정검사와 같이 전문의에 의해 정밀한 신체검사 실시하여 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질병에 의한 예비군의 병역면탈도 특사경 수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면탈 사례는 없습니다.

○ 복무면제자 중 병역면탈의 합리적 의심이 들거나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하겠습니다.

▲ 질 의 5

이것을 묻는 이유가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단순히 전역을 하거나 소집해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등 예비군 복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함.

△ 답 변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는 예비군 복무기간도 포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 성 준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박 성 준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전역 문제〉

1.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하여 현역 입대한 장병이 입영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5년간 2만명이 넘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2. 특히 정신질환 및 군복무적응 곤란자를 연간 수천명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는 피해를, 군에게는 병력운용의 애로를 일으키게 하고, 병무청의 전문성에도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에 대한 개선으로 현행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부대의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법 개정으로 통해 신설하고 2025년까지 전 부대에 전면시행하겠다는 해결책을 보고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국외체류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문제〉

【지난 10년간 국외체류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서 입영을 미루면 사실상의 면제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그간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병무청은 무엇을 했는지와 본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무엇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충원 필요〉

5. 사회복무요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만 3천여명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복무지도관 증원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2명만 증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현재 복무지도관 1인당 지도 사회복무요원 수는 624명입니다. 병무청장이 생각하는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사회복무요원 수는 몇 명입니까?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수가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번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을 꼭 하길 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처벌규정 강화 필요〉

8. 2018년 한 승선근무예비역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운업체 실태조사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부실업체 제재에 따른 인원배정 30% 제한만 받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9. 현재 직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30% 인원 배정 제한에서 2년간 50% 인원 배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지만 아직 제재 수위가 미약함.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폭행 등이 발생해도 업체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함. 반드시 강화하기 바람.

〈병무청 특사경 증원 및 홍보강화 필요〉

10. 병역면탈 적발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면탈을 적발하는 특사경 현원이 39명인데, 한 해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특사경 인원으로 병역면탈을 다 적발 할 수 있습니까? 특사경 인원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1.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위해선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신고가 1년에 40건이 되지 않습니다. 병무부조리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편의점 TV를 활용한 홍보는 병무부조리 신고가 유일한데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1년 전부터 윈도우 교체 예고에도 늦은 교체에 예비비 사용〉

12. 지난 1년 동안 병무청에 시도된 해킹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13. 윈도우7이 올해 1월 14일부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을을 알리며 1년 전부터 업그레이드를 독려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3달 전부터 교체를 권고해왔음. 하지만 병무청은 3월에 되어서야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마무리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지원이 종료된 1월부터 3월까지 몇 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병무청은 445건입니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보안을 중시하는 병무청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14. 다행히 방어막, 백신 프로그램 등으로 이 시기 문서가 유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데이터 보안에 관해 얼만큼 신경쓰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사이버 보안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계획인가요?

15. 병무청은 윈도우7 업데이트 비용을 예비비 사용으로 진행하였는데, 왜 미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사용을 하였나요?

<챗봇 "아라" 기술적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16. 올해 6월 서비스가 시작된 '아라'는 아직 보충할 게 많은데 직접 써보니 미흡한 점이 보이는데요?

17.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정보인데도 '20년 10월 현역병 모집 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15초가량 소비되는데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건 데이터 처리 기술 능력이 부족해선가요?

18. 단어 키워드 위주로 분석하는지, 키워드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면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객의 질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챗봇 시스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 시나리오들이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19.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서비스 DID를 1호로 도입해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챗봇이 하나도 답변을 못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넣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커녕 고객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임

20. 동문서답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신체검사 등급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군대 월급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21. 내부적으로 '아라' 기술력 중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 질 의 1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하여 현역 입대한 장병이 입영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5년간 2만명이 넘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심리상태는 가변성이 높아, 입영 후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정신질환 및 군복무적응 곤란자가 발생하고 있고,

○ 19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까지 약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 입영 시 사단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전문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복무부적합자 등의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군 복무 중 질병 악화 및 부상 등으로 군복무곤란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자 현황

(국방부 '20. 8.31.현재, 명)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계	6,202	6,118	5,583	5,121	4,572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4,922	4,789	4,280	3,909	3,570
군복무곤란질환자	1,280	1,329	1,303	1,212	1,002

▲ 질 의 2

특히 정신질환 및 군복무적응 곤란자를 연간 수천명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는 피해를, 군에게는 병력운용의 애로를 일으키게 하고, 병무청의 전문성에도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심리상태는 병역판정검사 당시와 입영신체검사의 시점 차이와 처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영 시에 정신적 취약자 선별 강화가 필요하나,

○ 현재 신체검사의 주체가 병무청 및 입영부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병무청은 모든 검사반에 임상심리사 및 정신과 전담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입영부대는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무부적합자 선별에 한계가 있어,

○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및 군복무적응 곤란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3

이에 대한 개선으로 현행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부대의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법 개정으로 통해 신설하고 2025년까지 전 부대에 전면시행 하겠다는 해결책을 보고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 답 변

○ 입영신체검사 병무청 일원화는

○ ’18년도에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2소위 계류 중에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 현재 관련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시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할 경우 검사 인원이 급증하므로 일일 적정 인원 검사가 곤란합니다.

○ 따라서, 검사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소요를 고려하여 ’21년에 2작사 입영 대상자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여 ’25년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 입영판정검사 단계적 시행(안)

구 분	’21년	’22년	’23・’24년	’25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2작사 일부	2작사+지작사 일부(舊 1군)	2작사+지작사	전면시행

▲ 질 의 4

그간 국외체류 전시근로역 편입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병무청은 무엇을 했는지와 본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무엇인지?

△ 답 변

○ 본인 및 국내·외 가족에게 허가기간 만료예정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귀국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시	▸	허가기간 만료 전	▸	허가기간 만료 후
· 허가기간 및 미귀국자 제재사항 안내 · 여권 부착용 병역안내 스티커 제작·배부 * 여권발급 맨 앞장에 부착		· 우편, 재외공관 협조공문(90일 전) · 모바일앱(90일 전 부터) 3회 · 알 림 톡(30일 전 부터) 3회 · 전자우편, 유선 안내 등(수시)		· 허가만료 후 30일 이내 귀국 안내문 발송 · 유선, 국내 가족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한 귀국 지속 독려

○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 미귀국자 발생 방지와 사후조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병역기피 목적 미귀국자 형사처벌 규정 강화(법 제94조, '16. 4. 20. 시행)
  * (종전) 3년 이하 징역 → (개정) 기피목적 있을 시 1년 ~ 5년 징역
- ○ 미귀국자 인적사항 등 홈페이지 공개(법 제81조의2)
-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법 제76조)
- ○ 여권발급 제한을 통한 국외활동 제재(여권법 제12조)

○ 앞으로 미귀국자에 대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질 의 5

사회복무요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만 3천여명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복무지도관 증원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2명만 증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변

○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 과다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복무지도관 증원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복무지도관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6

현재 복무지도관 1인당 지도 사회복무요원 수는 624명입니다. 병무청장이 생각하는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사회복무요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답 변

○ 현장중심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사회복무요원 수는 300명 수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법무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 200여명 감안

▲ 질 의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수가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번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을 꼭 하길 바랍니다.

△ 답 변

○ 네. 복무지도관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8

2018년 한 승선근무예비역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운업체 실태조사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부실업체 제재에 따른 인원배정 30% 제한만 받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답 변

○ ’18년 당시의 복무부실업체 제재 규정은 사망사고의 경우 ‘1년간 30% 인원배정 제한’이었습니다.

○ ’19년에 사망사고의 경우 인원배정 제한을 ‘1년간 30%’에서 ‘2년간 50%’로 개정,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질 의 9

현재 직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30% 인원 배정 제한에서 2년간 50% 인원 배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지만 아직 제재 수위가 미약함.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폭행 등이 발생해도 업체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함. 반드시 강화하기 바람.

△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19년부터 복무관리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지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보호체계 강화 내역

- ('18. 5월)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보호체계 마련
  - (승선 전) 근로권익 교육 → (승선 중) 권익침해 연 2회 이상 전수조사
- ('19. 5월)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강화
  - 직무상 사망사고 발생업체 : 1년간 30% → 2년간 50% 제한
  - 위법·부당행위로 벌금형 확정업체 : 1년간 30% → 100% 제외 등
- ('20. 1월)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배정제한 등 근무환경 개선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배정제한('23년부터 적용)
  - 성폭력처벌법 위반업체 1년 배정제외 대상에 추가
- ('20. 3월)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 인권침해 여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 해운업체 장의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 ('20. 8월) 업체 권익보호 노력 등 정책현장 방문 점검(청장)

○ 앞으로도, 사망 및 성폭력·폭행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질 의 10

병역면탈 적발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면탈을 적발하는 특사경 현원이 39명인데, 한 해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특사경 인원으로 병역면탈을 다 적발 할 수 있습니까? 특사경 인원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답 변

○ 병역면탈 적발을 위해 금년 2월에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1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전문분석관(1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특별사법경찰 인력증원은 직무범위 확대와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질 의 11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위해선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신고가 1년에 40건이 되지 않습니다. 병무부조리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편의점 TV를 활용한 홍보는 병무부조리 신고가 유일한데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답 변

○ 현재 편의점 TV 외에도 병무청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 예방홍보를 통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병역면탈 예방활동 현황 및 내역

('18년 ~ '20. 8월말)

구 분	건 수	비 고
병역의무자 면탈예방교육	5,798	매년 15개 병역판정검사장(30여만명), 매일 1회(5분)
홍보리플릿 배부	106	지방병무청, 출입국사무소 등 총 42,300매 배부
SNS(유튜브), 홈페이지, 언론보도	39	면탈 예방 및 국민신문고·전화 등 신고방법 안내
대국민 인식도 향상 홍보	2,748	지하철·버스정류장, 시·군·구 LED 전광판 등 유관기관 활용('20년 신규)

○ 병역면탈 제보 현황

-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 ('19년) 35건, ('18년) 27건, ('17년) 24건
- 국민신문고 신고 : ('19년) 117건, ('18년) 164건, ('17년) 131건

▲ 질 의 12

병무청장, 1년 동안 병무청에 시도된 해킹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해킹 시도는 총 2,038건이며 실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 질 의 13

윈도우7이 올해 1월 14일부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사전에 업그레이드를 독려하였으나 병무청은 3월에 마무리한 게 맞는지? 1월부터 3월까지 445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늦어진 이유는?

△ 답 변

○ 예, 윈도우7 PC 등 교체사업이 3월에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예비비 배정('19. 12. 9) 이후 즉시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연말 나라장터 단가갱신 및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생산 차질로 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PC 등 교체 시기

- 즉시 교체 가능한 윈도우10 운영체제(47개) : '19. 12월
- PC(1,746대) : '20. 2월, 노트북(155대) : '20. 3월

○ 교체 지연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 침해사례는 없었습니다.

＊ 윈도우7 PC 교체 지연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 조치사항
- (1단계) 윈도우7 교체 대상 전면 사용 중지
- (2단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담당자 승인 후 사용
- (3단계) 사이버 침해대비 집중 관제 및 국정원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질 의 14

기술지원 종료 후 교체시까지 문서 유출된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사이버 보안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계획인지?

△ 답 변

○ 외부 침입 원천차단을 위해 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24시간 365일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향후 사이버 보안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사이버안전센터, 국정원 등과 협조하여 사이버 침해 시도 유형별 대응훈련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노후화된 보안관제 장비 교체 등 사이버안전센터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1년 보안관제 고도화 예산 반영 : 534백만원

▲ 질 의 15

병무청은 윈도우7 업데이트 비용을 예비비 사용으로 진행하였는데, 왜 미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사용을 하였나요?

△ 답 변

○ 윈도우7 지원종료 발표('15년)에 따라 교체대상 중 업무용 PC 2,180대는 '16년에 5년 임차방식으로 일괄교체하였습니다.

○ 다만, 인터넷 등 비업무용 PC 교체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예비비를 신청·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17~ '18년 2년간 추가 PC 구매 소요예산 미반영

○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6

올해 6월 서비스가 시작된 '아라'는 아직 보충할게 많은데 직접 써보니 미흡한 점이 보이는데요?

△ 답 변

○ 챗봇 '아라'는 6월 8일 서비스를 시작하여 아직은 운영 초기라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류율 : 1.1%, 미응답률 : 3.3%

○ 2차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오류 등을 지속 보완하고 모든 단순 상담을 수용, 컨설팅 상담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챗봇 활용, 24×365 민원 상담시스템 구축

- (1차) 상담소 단순상담의 80% 수용, 대화형 민원출원 39종 접수
- (2차) 모든 단순상담 수용, 민원출원 51종으로 확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상담 도입

▲ 질 의 17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정보인데도 '20년 10월 현역병 모집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15초가량 소비되는데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건 데이터 처리 기술능력이 부족해선가요?

△ 답 변

○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접수 행사시 민원질의가 집중될 경우, 서버 과부하로 답변까지 9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최적화 작업 수행 및 서버용량 증설을 검토하여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8

단어 키워드 위주로 분석하는지, 키워드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면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객의 질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챗봇 시스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 시나리오들이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 답 변

○ 챗봇 '아라'의 민원인 질의 인식 방법은 문장과 키워드(용어)를 조합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 질의에 포함된 용어의 미학습으로 인해 질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미답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질의중 4.4% 미인식(오류+미응답)

○ 모니터링을 통해 미인식 질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질의 인식률을 95.6%에서 98% 이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 질 의 19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서비스 DID를 1호로 도입해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챗봇이 하나도 답변을 못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 데이터도 넣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커녕 고객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임

△ 답 변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신규 정책·서비스, 법령개정에 대한 상담 시나리오 작성, 현행화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챗봇 상담시나리오 운영 인력 : 7명

▲ 질 의 20

동문서답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신체검사 등급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군대 월급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 답 변

○ 전체 질의중 1%정도 사용자 질의에 대한 착오인식으로 틀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착오인식 질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내년부터는 착오응답률을 1%에서 0.5% 이하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21

내부적으로 '아라' 기술력 중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 답 변

○ 기계학습 기반인 챗봇 '아라'는 의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 현재 기술 수준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자가 학습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지속적인 학습과 상담시나리오 추가 등을 통해 미응답과 오류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도화 사업이후 개선율
  - 정상응답률 : 96% → 98%
  - 오류율 : 1.1% → 0.5%
  - 미응답 : 3.3% → 1.5%

국민의힘 이 채 익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이 채 익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신체등급 판정제도 폐지, 현역 적합/부적합 제도 도입>

1. 징병검사를 하는 신체등급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어차피 1~3급은 다 현역으로 군대를 갑니다.
   1~3급 등 등급별로 '자대배치'나 '보직'에 특별한 영향 줍니까? 아니면 해당 부대에서 신체등급 별로 병사들을 관리합니까?

2. <질병, 심신장애 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무정자증이나 과소정자증이 3급, 발기부전도 3급, 혈뇨를 일으키는 정낭염은 2급입니다. 굳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런 병명을 가지고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습니까?

3. 음낭정자종 2급이라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병입니까?

4. 생식기와 관련된 것은 남성에게 일종의 자존심, 콤플렉스와 관련되는데 굳이 이런 병명에 대해서 신체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옳은 것입니까?

5. 등급을 매기는 등급제에서 현역에 '적합하다'/'부적합하다' 등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6. 예전에도 지적한 바 있고, 병무청에서도 검토 하겠다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스티브 유, 국내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병무청 입장〉

7. 최근 가수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씨가 LA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셨죠?

8. 스티브 유 측은 소장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요. 2002년 당시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잖습니까? 지금 유 씨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유 씨의 입국금지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10. 작년 병무청 부대변인(별첨기사 참조)이 라디오에 나와서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 유 씨측은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병무청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12. 본 의원도 유 씨의 경우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상당했고, 병역기피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국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입국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병무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시대, 병역자원 급감시대 도래함에 따라 병무청 조직재편 압박 거세져〉

13.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입영대상으로 분류될 20세 남성인구가 2015년 37.5만명에서 2022년 25.9만명, 약 12만 여명 감소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자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14. 병 복무기간 단축, 20대 남성인구 급감 전망에 따라 軍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의거 우리 군의 상비군 유지 규모를 2022년 기준 50만명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군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성 숫자를 줄이는 등, 감군(減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무청 행정조직 감축 및 재편 계획은 없는지?

15. 통상 전체 병역자원 중 약 80%가 예비역 등 병력동원 대상이고, 징집·소집 및 대체복무 인원은 약 20% 정도 되지요? 그간 우리 병무행정은 입대 전 병역자원의 병역처분과 징집·소집 등에 많은 비중을 쏟아 왔기에 이제는 병무행정 조직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원 증원은 업무량과 상관없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全 행정조직의 비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대한민국 공공영역은 파킨슨의 법칙이 비판하는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과 포퓰리즘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병무청이 자체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 이에 본 의원은 병역정책 운영을 포함한 전체 병무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소요를 재검토하는 등 병무청 본부와 지방청 조직 전체에 대한 진솔한 조직진단만이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특히 행정소요가 급감하고 있는 부문의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여 신규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피의자 신분으로 입대하는 인원,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100명 넘어>

19. 청장, 작년에 연예인 '승리'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군에 입대한 것 알고 계시죠?

20. 승리 입대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는 "군대로 도피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다."라며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1. 유죄판결 전까지는 기초군사훈련부터 자대 병영생활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장 아셨습니까? 내 자식이 상해,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걱정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청장께서 약속하신 만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최소한 중범죄 이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인원들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청장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법 개정을 하건 제도 개선을 하건 노력해야 합니다. 청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에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전환자 현역입영은 평등/불평등의 문제인가?>

23. 올해 초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한데 대해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신장애(3급)로 판정해 전역처분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아시죠?

24. 당시 육군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 지금 성전환자는 '성주체성장애'로 4, 5급 또 성전환수술은 '음경절단', '고환결손'으로 4, 5급 판정, 즉 현역 입영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26. 성전환자가 현역입영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평등, 불평등의 문제입니까?

27. 성전환 결정은 개인 자유의 권리이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등, 불평등 문제를 떠나 군대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28. 당시 육군의 판단은 병역판정 기준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만약, 육군이 복무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면 성전환자의 현역 입영을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병역판정과 배치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됐으면 성전환자에 대한 병역판정 등급도 바꿔야 했지요?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제도 실효성 위해 최대한 공개해야〉

29.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제외하면 2,698명 됩니다. 그렇지요?

30. 병무청에서는 지금 2015년도부터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1. 그런데, 지금 병무청의 공개된 명단 숫자를 보면 실제 병역기피자의 절반도 훨씬 안 됩니다.
2016년은 병역기피자가 740명인데, 137명만 공개해 18.5%, 2017년은 740명의 23.8%인 176명, 2018년은 543명의 36.8%인 200명만 공개했습니다. 실제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2. 공개제외 대상 기준을 보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33. 결국 병무청이 병역기피라고 판단해놓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34. 지금처럼 공개 제외가 많아지는 것은 명단공개를 통해 병역기피를 줄이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단공개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해보고 개선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진실성 어떻게 판단하나?>

35.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오자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평소 총기게임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청장님, 2017년 헌재판결 당시 이런 의도적인 군 복무 회피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됐던 바지요?

36. 검찰은 총기게임이나 폭력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런 게임을 해도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 법원의 판단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 청장, 지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이 지난 8월말 현재 448명이지요?

38.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을 판단하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복무로 편입됩니까?

39. 내면의 신념인 양심을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힘든데요. 청장, 특정 종교를 빙자해 병역회피에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병무청이 현재 특정종교를 통한 병역회피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까? 청장, 어느 정도 됩니까?

▲ 질 의 1

징병검사를 하는 신체등급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어차피 1~3급은 다 현역으로 군대를 갑니다.
1~3급 등 등급별로 '자대배치'나 '보직'에 특별한 영향 줍니까?
아니면 해당 부대에서 신체등급 별로 병사들을 관리합니까?

△ 답 변

○ 현역병 입영 후 병사들의 특기분류시 점수산정 고려요소에 신체등급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어 자대배치하고 주특기 부여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모집병의 경우 특공병, 특전병 등 일부 주특기의 경우 신체등급을 1급, 2급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질 의 2

<질병, 심신장애 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무정자증이나 과소정자증이 3급, 발기부전도 3급, 혈뇨를 일으키는 정낭염은 2급입니다. 굳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런 병명을 가지고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습니까?

△ 답 변

○ 병역판정검사 시 무정자증이나 과소정자증, 발기부전, 정낭염은 2급 또는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현역입영대상자를 1~3급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한 이유는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판정을 하고 입영 후 특기분류 시에 활용하고 특공병, 특전병 등 모집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만약 해당질병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판정에 대한 불만 및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 질 의 3

음낭정자종 2급이라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병입니까?

△ 답 변

○ 음낭정자종은 남성 생식기인 음낭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져, 이 덩어리를 조직검사하면 정자가 검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 병무청 비뇨의학과 전문의사 의견

▲ 질 의 4

생식기와 관련된 것은 남성에게 일종의 자존심, 콤플렉스와 관련되는데 굳이 이런 병명에 대해서 신체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옳은 것입니까?

△ 답 변

○ 해당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명은 민감정보로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음

▲ 질 의 5

등급을 매기는 등급제에서 현역에 '적합하다'/'부적합하다' 등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답 변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등급 판정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을 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연도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연 도	'95~'20년	'94년	'93년	'92년	'87~'91년	'84~'86년
신체등급에 따른 현역 처분 기준	1~3급	1~4급	1~3급	1~4급	1~2급	1~3급

○ 만약 현역 적합, 부적합으로만 판정할 경우 군소요 인원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로 구분하여 4급(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서비스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5급(전시근로역)은 전시 물자수송 인력 등 자원의 특성에 알맞은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신체등급 판정은 필요합니다.

▲ 질 의 6

예전에도 지적한 바 있고, 병무청에서도 검토 하겠다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답 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등급제도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폐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신체등급 용어가 인권적 측면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용어변경에 대해 국방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검토하였으나,

○ 신체등급 용어는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용어 변경시 국민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체등급 용어변경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질 의 7

최근 가수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씨가 LA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셨죠?

△ 답 변

○ 네, 보았습니다.

▲ 질 의 8

스티브 유 측은 소장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요. 2002년 당시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잖습니까? 지금 유 씨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하였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 의 9

유 씨의 입국금지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 답 변

○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 질 의 10

작년 병무청 부대변인(별첨기사 참조)이 라디오에 나와서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 변

○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로 부르고 있습니다.

▲ 질 의 11

유 씨측은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병무청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답 변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질 의 12

본 의원도 유 씨의 경우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상당했고, 병역 기피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국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입국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병무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브 유는 수차례 성실한 병역 이행을 공언하였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탈하였습니다.

○ 입국 허용 시 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풍조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현재도 스티브 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므로 입국금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질 의 13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입영대상으로 분류될 20세 남성인구가 2015년 37.5만명에서 2022년 25.9만명, 약 12만 여명 감소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자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 답 변

○ 예, 20세 남성 인구가 '22년 25만 9천여 명, '37년 이후에는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그에 따라 병역자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질 의 14

병 복무기간 단축, 20대 남성인구 급감 전망에 따라 軍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의거 우리 군의 상비군 유지 규모를 2022년 기준 50만명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군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성 숫자를 줄이는 등, 감군(減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무청 행정조직 감축 및 재편 계획은 없는지?

△ 답 변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및 새롭게 확대되는 기능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기 노력해 왔습니다.

▲ 질 의 15

통상 전체 병역자원 중 약 80%가 예비역 등 병력동원 대상이고, 징집·소집 및 대체복무 인원은 약 20% 정도 되지요? 그간 우리 병무행정은 입대 전 병역자원의 병역처분과 징집·소집 등에 많은 비중을 쏟아 왔기에 이제는 병무행정 조직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답 변

○ 징·소집 분야 업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급격한 조직 재편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을 기능이 확대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의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원 증원은 업무량과 상관없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는지?

△ 답 변

○ 영국의 경영학자인 파킨슨이 거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경영학, 행정학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병무청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 질 의 17~18

17. 대한민국 공공영역은 파킨슨의 법칙이 비판하는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과 포퓰리즘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병무청이 자체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 이에 본 의원은 병역정책 운영을 포함한 전체 병무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소요를 재검토하는 등 병무청 본부와 지방청 조직 전체에 대한 진솔한 조직진단만이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특히 행정소요가 급감하고 있는 부문의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여 신규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답 변

○ 병무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병역자원 감소 등 병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군복무가 청년층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면탈 차단'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있으며,

○ 행정수요 감소 분야 인력을 확대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9

청장, 작년에 연예인 '승리'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군에 입대한 것 알고 계시죠?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20

승리 입대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는 "군대로 도피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다."라며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답 변

○ 20대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 발의로 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국방위 소위 상정 전 20대 국회 회기만료('20년 5월)로 폐기되었습니다.

▲ 질 의 21

유죄판결 전까지는 기초군사훈련부터 자대 병영생활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장 아셨습니까? 내 자식이 상해,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걱정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 수사·재판중인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입영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 질 의 22

청장께서 약속하신 만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최소한 중범죄 이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인원들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청장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법 개정을 하건 제도 개선을 하건 노력해야 합니다. 청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에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답 변

○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앞으로, 관련사항을 심층 검토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취지와 추진방향에 맞춰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23

올해 초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한데 대해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신장애(3급)로 판정해 전역처분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아시죠?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24

당시 육군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부사관 복무자에 대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신체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전역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3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 질 의 25

지금 성전환자는 '성주체성장애'로 4, 5급 또 성전환수술은 '음경절단', '고환결손'으로 4, 5급 판정, 즉 현역 입영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성주체성장애, 음경절단의 경우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으로 고환결손은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처분하여 현역입영 대상이 아닙니다.

▲ 질 의 26

성전환자가 현역입영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평등, 불평등의 문제입니까?

△ 답 변

○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고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어, 병이 아닌 부사관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전환자가 현역입영이 안되는 이유는 평등,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 의 27

성전환 결정은 개인 자유의 권리이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등, 불평등 문제를 떠나 군대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답 변

○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병(兵)의 경우 같은 내부반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군(軍)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 의 28

당시 육군의 판단은 병역판정 기준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만약, 육군이 복무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면 성전환자의 현역 입영을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병역판정과 배치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됐으면 성전환자에 대한 병역판정 등급도 바꿔야 했지요?

△ 답 변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부사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해당 군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과 부사관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다릅니다.

- ○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병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 부사관은「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 의 29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제외하면 2,698명 됩니다. 그렇지요?

△ 답 변

○ 최근 5년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제외한 병역기피자는 1,636명이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거부자를 포함할 경우 2,725명입니다.

○ 병역기피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병역기피자			
	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사회복무
’20. 8월	179	31	111	37
’19년	496	108	316	72
’18년	543	93	382	68
’17년	740	79	603	58
’16년	767	42	663	62

▲ 질 의 30

병무청에서는 지금 2015년도부터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답 변

○ 예, 2015. 7. 1. 이후 기피자부터 공개(2016년)하고 있습니다.

▲ 질 의 31

지금 병무청의 공개된 명단 숫자를 보면 실제 병역기피자의 절반도 훨씬 안 됩니다. 2016년은 병역기피자가 740명인데, 137명만 공개해 18.5%, 2017년은 740명의 23.8%인 176명, 2018년은 543명의 36.8%인 200명만 공개했습니다. 실제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변

○ 병역기피자 중 다음해 연말(12월) 명단 공개 전에 병역의무 이행하거나 병역처분변경, 사망 등으로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는 사람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회' 심의를 거쳐 공개 제외를 하고 있으며,

○ 공개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처분변경 등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외(삭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공개명단에서 즉시 삭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연도별 병역기피자 발생 대비 명단 공개 현황

('20. 8.31.현재, 명)

발 생		공개 제외	공 개		
발생연도	인원		최초 공개	공개 삭제	공개 중
'19년	641	-	심의 후 공개예정	-	-
'18년	678	417	261	59	202
'17년	917	660	257	81	176
'16년	922	656	266	129	137
'15년	901	664	237	211	26

* (도입) '15. 7. 1. 시행 / (공개항목)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법위반조항 등 6개
* 절차 : 잠정공개 결정(2월) → 소명기회 부여 → 최종공개 결정(11월) → 명단공개(12월)

▲ 질 의 32

공개제외 대상 기준을 보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질 의 33

결국 병무청이 병역기피라고 판단해놓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 답 변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의 목적은 병역의무자들의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성실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14. 12. 30. 병역법 개정, ’15. 7. 1. 시행
* ’15. 7. 1. 이후 기피자 ’16. 12. 20. 최초 공개

○ 공개 제외는 병역법령에 따른 것이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질 의 34

지금처럼 공개 제외가 많아지는 것은 명단공개를 통해 병역기피를 줄이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단공개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해보고 개선하시겠습니까?

△ 답 변

○ 병역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제외를 합니다.

ㅇ **병역법시행령 제160조제1항**(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 의 35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오자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평소 총기게임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청장님, 2017년 헌재판결 당시 이런 의도적인 군 복무 회피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됐던 바지요?

△ 답 변

○ 네.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 도입 기본방향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여 숭고한 병역의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현역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외부와 차단되고 합숙복무가 가능한 점 등 현역병과 복무환경이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복무분야를 단일화하였고,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여 복무 난이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질 의 36

검찰은 총기게임이나 폭력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런 게임을 해도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 법원의 판단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일부 법원에서 총기게임이나 폭력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한 사례도 있으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례처럼 유죄판결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법원은 총기게임이나 폭력게임 접속 여부만으로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내면의 신념인 양심이 외부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종교활동 기간, 범죄경력, 총기게임이나 폭력게임 여부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 의 37

청장, 지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이 지난 8월말 현재 448명이지요?

△ 답 변

○ 네, 지난 8월말 현재 448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되었고,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 질 의 38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을 판단하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복무로 편입됩니까?

△ 답 변

○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 질 의 39

내면의 신념인 양심을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힘든데요. 청장, 특정 종교를 빙자해 병역회피에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병무청이 현재 특정종교를 통한 병역회피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까? 청장, 어느 정도 됩니까?

△ 답 변

○ 우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인 양심의 실체, 진실성, 구속력을 기준으로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 독일·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교와 개인신념을 구분, 각각 8개의 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하였고, 지난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전문적이고 엄격한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감사 담당 등 유사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사실조사관으로 배치하고,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서면심사, 학교, 종교단체 등 현장조사 및 주변인 진술조사 등 신청인의 삶 전반에 대한 엄격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절차도 필요합니다. 사실조사가 종료되면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재차 서면 및 대면 심사 등 심층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며, 대체복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만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종교인 등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부정 편입을 도운 사람까지도 병역법 제88조의2와 제91조의2에 따라 형사 처벌하게 됩니다.

○ 현재까지 특정종교를 통한 병역회피 악용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다 보니 현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부정편입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